

대법원 2022다265635, 2022다265642(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피고(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TFT-LCD용 글라스 기판 제조 공정 일부를 도급 받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공장에서 TFT-LCD용 글라스 기판 제조 공정 중 일부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65635(본소), 265642(병합) 판결]

1. 사안의 개요

- 피고는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공장의 TFT-LCD용 글라스 기판 제조 공정 일부를 주식회사 A에 도급 주었음
- 원고들은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들로, 이 사건 공장에서 TFT-LCD용 글라스 기판 제조 공정 중 일부 업무에 종사하였음
- 원고들은, 피고와 주식회사 A가 체결한 도급계약의 실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인데, 원고들이 행한 업무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데다가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 A로부터 근로

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이상 피고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함

2. 소송의 경과

- ▣ 제1심 ➡ 원고들 승
- ▣ 원심 ➡ 피고 항소기각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 피고 상고기각(원심 수긍)

다.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 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

라.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판단 근거

- 주식회사 A의 현장관리자들의 역할과 권한은 피고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고, 주식회사 A의 근로자들은 피고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되어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 주식회사 A의 근로자들은 피고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 사건 공장의 공정 중 Cold 공정¹⁾은 피고가 담당한 선행 Hot 공정²⁾과 컨베이어 벨트로 이어져 있어, 주식회사 A가 담당한 Cold 공정 업무의 작업량과 작업속도는 Hot 공정의 영향을 받았고, Cold 공정에서는 피고가 담당하는 업무와 주식회사 A가 담당하는 업무가 전후로 이어져 상호 연동되기도 하였음
 - Gut 공정³⁾은 주식회사 A의 근로자들만이 수행하였고 선행 Cold 공정과 설비가 단절되어 있었지만, 그 작업량은 Cold 공정의 영향을 받았고, 피고는 설비 구동 속도를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Gut 공정의 작업 속도를 통제하였음
 - 주식회사 A의 근로자들 중 입사 후 담당 공정이 변경된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이들의 담당 업무가 Cold 공정과 Gut 공정 중 어느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도 않았음
- 주식회사 A는 피고가 결정한 인원 배치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에 배치하였고, 주식회사 A의 근로자들의 작업·휴게시간과 휴가 등은 피고의 생산 계획의 영향을 받았음

1) Hot 공정에서 성형된 글라스를 검사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게 절단, 포장하여 출하하는 공정
2) 원재료를 가마에 투입하여 글라스를 넓은 띠 형태로 성형 및 냉각하는 공정
3) Cold 공정을 거친 제품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으로, ① 품질 문제로 재검사나 세정이 필요한 제품을 재유동하는 세정 공정과 ② 결합이 있거나 크기 축소가 필요한 제품을 작은 크기로 절단하는 Off 공정으로 나뉨

- 피고와 주식회사 A가 체결한 도급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회사 A의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성이 높은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 주식회사 A는 설립 이후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도급계약이 해지되자 폐업하였으며, 생산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